

# 『미국, 오존층 파괴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업데이트』 심층분석 보고서

2024. 11.

TBT 통보 여부	통보	HS Code	29, 28, 3827
통보국	미국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4,029,277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 목 차 ]

1. 규제 개요 .....	1
2. 개정 세부내용 .....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	9
붙임. 규제 참고자료 .....	10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오존층 파괴 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ODS) 배출량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마련함
- (규제요지) 미국 EPA는 class I 규제 물질 및 class II 규제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명시함

TBT 통보번호	USA/2060/Add.1	통보일	2024년 10월 17일
		고시일	-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층권 오존 보호: 오존층 파괴 물질을 공정에서의 사용물질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업데이트</li> <li>Protection of Stratospheric Ozone: Updates Related to the Use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as Process Agents</li> </ul>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호청</li> <li>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li> </ul>		
요구사항 유형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 준수		
제·개정 상태	개정 최종안		
채택일	-		
의견수렴 마감일	-		
발효일	2024년 11월 12일		
준수기한	-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존층 파괴 물질</li> <li>Ozone depleting substances</li> </ul>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 제제로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화학 산업 생산 (ICS 코드: 71.020); 화학 산업 제품(ICS 코드: 71.100)</li> </ul>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4,029,277	HS Code	29, 28, 3827

## □ (개정 세부내용)

- (개요) 미국 EPA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업데이트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동 개정안에서는 class I 규제 물질 및 class II 규제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에 대해 명시함
- (class I 규제 물질 및 class II 규제 물질에 대한 정의)
  - 동 개정안에 따라 § 82.3항에 배치 방출 에피소드, 배치 공정 또는 배치 작업, 부산물, 연속 공정 또는 작동 등의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시설 및 공장의 정의가 개정됨

[표 1] 동 개정안

## § 82.3 class I 및 class II 규제 물질에 대한 정의(개정 항목)

- 배치 방출 에피소드(batch emission episode)는 공정에서 용기와 관련된 개별 환기 에피소드를 의미합니다. 선박에는 하나 이상의 배치 방출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물질로 용기의 충전으로 인한 증기의 변위는 충전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개별 방출 에피소드를 초래하고 충전 속도와 동일한 평균 유량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용기가 가열되면 팽창된 증기의 배출로 인한 또 다른 개별 방출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배출 에피소드는 또한 공정 작동에 따라 동일한 용기 및 공정의 다른 용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치 공정 또는 배치 작업은 장비에 대한 간헐적 또는 불연속적인 공급을 포함하는 비연속 작업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배치 작업이 중단된 후 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를 비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원료 추가와 제품 회수는 배치 작업에서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산물(이 하위 파트의 목적으로만 해당)은 다른 화학 물질의 생산 중에 우연히 생성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 연속 공정 또는 작업은 공정 기간 동안 입력과 출력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연속 공정은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입니다.
-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것은 모니터링 인력을 지지 표면에서 2미터(7피트) 이상 올리지 않으면 장비 부분을 모니터링할 수 없거나 규제 물질 서비스 중일 때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이중 메카니컬 씰 펌프 및 이중 메카니컬 씰 교반기는 배리어 유체가 가벼운 액체 서비스가 아닌 배리어 유체 시스템을 포함하는 이중 메카니컬 씰 시스템이 장착된 펌프 또는 교반기를 의미합니다. 각 배리어 유체 시스템에는 씰 시스템, 배리어 유체 시스템 또는 둘 다의 고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1) 각 이중 메카니컬 씰 시스템은 항상(시작, 종료 또는 오작동 기간 제외) 펌프 또는 교반기 스테어링 박스 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 배리어 유체와 함께 작동됩니다. 또는
  - (2) 공정 또는 연료 가스 시스템으로 라우팅되거나 폐쇄 벤트 시스템으로 제어 장치에 연결되는 배리어 유체 탈기 저장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는
  - (3) 배리어 유체를 공정 스트림으로 퍼지하는 폐쇄 루프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장비(§ 82.25의 목적상)는 § 82.25(b)(2)에 나열된 공정에 대한 규제 물질 서비스의 각 펌프,

압축기, 교반기, 압력 완화 장치, 샘플링 연결 시스템, 개방형 밸브 또는 라인, 밸브, 커넥터 및 계측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가 배출되는 모든 파괴 장치 또는 폐쇄 환기 시스템.

▪ 시설이란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거나 동일한 사람의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 이상의 공장을 의미합니다.

▪ 공장은 원료 또는 공급 원료 화학 물질을 규제 물질로 전환하거나 다른 화학 물질 생산에 규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공정 장비(예: 반응기, 증류탑)를 의미합니다.

...

...

(이하 생략)

### ○ (class I 규제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

- (일회성 보고 요구사항) class I 규제 물질을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또는 2025년 2월 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시설 정보, 사용 목적, 최종 제품, 배출량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함

### [표 2] 동 개정안

#### § 82.13 class I 규제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

(ee) 공정 물질.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모든 법인은 § 82.25의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 외에도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1) 보고 - 일회성 보고. 2025년 2월 7일까지 또는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중 늦은 날까지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모든 법인은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할 때마다 다음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한다:

(i) 각 시설 및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각 책임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ii) class I 규제 물질을 사용하는 각 공정 물질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목적 및 제조된 최종 제품

(iii) 각 시설의 가동 개시일 및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약품으로 사용하는 각 공장의 가동 개시일

(iv) 각 시설에 대해 이전 관리 기간 동안 공정 물질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조된 각 제품 및 부산물의 이름과 양(폐기되거나 원료로 사용된 양 포함)을 제공한다.

(v) 각 시설에 대해 이전 관리 기간 동안 공정 약제로 사용된 class I 규제 물질의 총 대기, 비산 대기 및 스택 포인트 대기 배출량

(v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물질로 사용되는 class I 규제 물질의 사용 또는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이거나 현재 평가 중인 기술 및 조치에 대한 설명(각각과 관련된 예상 배출 감소량 포함)

(vi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물질로 사용되는 class I 규제 물질의 비율과 세부 정보가 포함된 설명:

(A) 공정 물질 애플리케이션 내에 보관됨;

(B) 공정 물질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됨;

(C) 공정 물질 적용 후 복구됨;

(D) 방출; 및

(E) 최종 제품에 포함됨.

- (연간 보고 요구사항) 매년 2월 14일까지 각 시설별로 class I 규제 물질의 사용량과 배출량, 재사용 및 폐기 방식, 배출량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변경 사전 통지) class I 규제 물질 사용량 또는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최소 180일 전에 EPA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지해야함

[표 3] 동 개정안

<p>(2) 연례 보고서.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모든 법인은 매년 2월 14일까지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할 때마다 다음 정보가 포함된 이전 관리 기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해야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각 시설에 대해 주 연락 담당자 및 대체 연락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li> <li>(i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공정 물질 신청서에 처음 도입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이름과 양(해당 class I 규제 물질의 여부에 따라 이 섹션의 (ee)(2)(ii)(A) ~ (G)항에 독립적으로 명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버진으로 획득;</li> <li>(B) 중고로 획득;</li> <li>(C) 법인에서 생산;</li> <li>(D) 미국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경우;</li> <li>(E) 수입;</li> <li>(F) 법인이 다른 용도로부터 회수한 경우; 그리고</li> <li>(G) 다른 법인에 의해 회수된 경우;</li> </ul> </li> <li>(ii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물질로 사용되어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공정 물질 적용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이름과 양.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공정 물질 적용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된 각 class I 규제 물질;</li> <li>(iv) 각 시설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정 약품으로 사용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이름과 양을 기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변형;</li> <li>(B) 다른 공정 물질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됨, 또는</li> <li>(C) 승인된 파기 기술에 의해 파기;</li> </ul> </li> <li>(v) 각 시설에 대해 공정 약제로 사용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총 공기, 비산 공기 및 스택 포인트 공기 배출량;</li> <li>(vi) 각 시설에 대해 이전 관리 기간 동안 공정제 적용에서 제조된 각 제품 및 부산물의 이름과 양(파괴되거나 원료로 사용된 양 포함);</li> <li>(vii) 각 시설에 대해, 마지막 일회성 또는 연간 보고서 이후 취했거나 계획 중이거나 현재 평가 중인 공정제로 사용된 class I 규제 물질에 대한 배출 감소 조치에 대한 설명.</li> <li>(viii) 각 사업체의 경우, 다음 연례 보고서에서 이전 관리 기간 및 이전 3개 관리 기간의 평균과 비교하여 다음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공정제 적용 변경은 변경을 시행하기 최소 180일 전에 EPA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명시해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공정 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class I 규제 물질의 양이 20% 이상 또는</li> <li>(B)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동안 배출되는 양이 1미터톤 이상이고 배출량의 20% 이상.</li> </ul> </li> </ul>
---

- (기록 보관 요구사항) 각 시설에서 사용한 class I 규제 물질의 생산, 수령, 판매, 배출량 측정 방법, 사고 발생 시 방출량 등을 포함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모든 기록은 해당 관리 기간 동안 유지해야함

[표 4] 동 개정안

(3) 기록 보관. 관리 기간 동안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약제로 사용하는 모든 법인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i)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공정 신청서에 처음 도입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수량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 (ii)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생산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수량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 (iii) 법인이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수령한 class I 규제 물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식별하는 기록;
- (iv) 각 시설에 대해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문서화한 송장 또는 영수증 사본(법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 (v)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여 각 시설 내에서 제조된 각 제품의 수량을 식별하는 날짜가 기재된 기록;
- (v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약제로 사용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유출 또는 방출이 100파운드 이상인 날짜와 예상 수량에 대한 기록;
- (vii) 각 시설에 대해 배출량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 보고된 배출량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 장비 매개변수, 측정 데이터, 근거 계산 및 기타 근거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 (viii) 각 시설에 대해, 이후 변형 또는 폐기되는 공정 약제로 사용된 각 class I 규제 물질의 양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 (ix) 공정 물질로 사용된 class I 규제 물질이 최종적으로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한 법인 이외의 법인에 의해 변형된 경우, 미국 또는 당사국인 다른 국가에서 통제 물질의 구매자 또는 수령자가 통제 물질을 변형하거나 변환을 위해 통제 물질을 판매하려는 의도를 증명하는 국세청 증명서 사본; 및
- (x) 공정 물질로 사용된 class I 규제 물질이 최종적으로 class 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한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해 파기된 경우, 미국 또는 당사국인 다른 국가에서 규제 물질의 구매자 또는 수령자가 규제 물질을 파기하거나 파기를 위해 규제 물질을 판매하려는 의도를 증명하는 파기 확인서(이 섹션의 (k)항과 동일)의 사본입니다.

- (사용 중단 통지) class I 규제 물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지해야하며, 이후 보고 의무는 종료되지만, 기존의 기록 보관 의무는 준수해야함

[표 5] 동 개정안

(5)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통지. 기업이 모든 class I 규제 물질의 공정 물질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했음을 관리자에게 통지한 다음 해부터 공정 물질 사용에 대한 보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기업은 모든 해당 기록 보관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class II 규제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사항)

- (일회성 보고 요구사항) class II 규제 물질을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또는 2025년 2월 7일까지 시설 및 책임자 정보, 사용 목적, 최종 제품, 배출량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표 6] 동 개정안

§ 82.24 class II 규제 물질에 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 사항

(g) 공정 물질.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모든 법인은 § 82.25의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 외에,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각 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보고 - 일회성 보고. 2025년 2월 7일까지 또는 사업체가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까지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는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할 때마다 다음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i) 각 시설 및 공장의 이름과 주소, 각 책임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ii) class II 규제 물질을 사용하는 각 공정 물질 애플리케이션의 이름, 용도 및 제조된 최종 제품;
- (iii) 각 시설의 가동 개시일 및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각 공장의 가동 개시일;
- (iv) 각 시설에 대해 이전 관리 기간 동안 공정제 신청에서 제조된 각 제품 및 부산물의 이름과 양(폐기되거나 원료로 사용된 양 포함);
- (v) 각 시설에 대해 이전 관리 기간 동안 공정제로 사용된 class II 규제 물질의 총 대기, 비산 대기 및 스택 포인트 대기 배출량;
- (v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약제로 사용되는 class II 규제 물질의 사용 또는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이거나 현재 평가 중인 기술 및 조치에 대한 설명(각각과 관련된 예상 배출 감소량 포함).
- (vi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약제로 사용되는 class II 규제 물질의 비율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설명 및:
  - (A) 공정 물질 신청서 내에 보관;
  - (B) 프로세스 물질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됨;
  - (C) 공정 물질 적용 후 회수됨;
  - (D) 방출; 및
  - (E) 최종 제품에 포함됨.

- (연간 보고 요구사항) 매년 2월 14일까지 class II 규제 물질의 사용량, 재사용 및 폐기 방식, 배출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변경 사전 통지) class II 규제 물질 사용량 또는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 최소 180일 전에 EPA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지해야함

[표 7] 동 개정안

(2) 연례 보고서.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모든 법인은 매년 2월 14일까지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할 때마다 다음 정보가 포함된 이전 관리 기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i) 각 시설에 대해 주 연락 담당자 및 대체 연락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정보;
- (ii) 각 시설에 대해, 공정제로 사용하기 위해 공정제 신청서에 처음 도입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이름과 양(해당 class II 규제 물질의 여부에 따라 이 섹션의 (g)(2)(ii)(A) ~ (G)항에 독립적으로 명시됨):
  - (A) 버진으로 획득;

- (B) 중고로 획득;
  - (C) 법인에서 생산;
  - (D) 미국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 (E) 수입;
  - (F) 법인이 다른 용도에서 회수한 경우; 및
  - (G) 다른 법인에 의해 회수된 경우;
- (ii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약제로 사용되었고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공정 약제 적용에 계속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이름과 양. 해당 법인이 동일한 시설에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이름과 양;
- (iv) 각 시설에 대해 최종적으로 공정 물질로 사용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이름과 양:
- (A) 변형;
  - (B) 다른 공정 물질 응용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 또는
  - (C) 승인된 파기 기술에 의해 파기됨;
- (v) 각 시설에 대해 공정제로 사용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총 공기, 비산 공기 및 스택 포인트 공기 배출량;
- (vi) 각 시설에 대해 이전 관리 기간 동안 공정제 적용에서 제조된 각 제품 및 부산물의 이름과 양(폐기되거나 공급 원료로 사용된 양 포함);
- (vii) 각 시설에 대해, 마지막 일회성 또는 연간 보고서 이후 취했거나 계획 중이거나 현재 평가 중인 공정제로 사용된 class II 규제 물질에 대한 배출 감소 조치에 대한 설명.
- (viii) 각 사업체의 경우, 다음 연례 보고서에서 이전 관리 기간 및 이전 3개 관리 기간의 평균과 비교하여 다음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모든 공정제 적용 변경 사항은 변경을 시행하기 최소 180일 전에 EPA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A) 공정 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처음에 도입된 class II 규제 물질의 양이 20% 이상, 또는
  - (B) 공정 물질로 사용하는 동안 배출되는 양이 1미터톤 이상이고 배출량의 20% 이상인 경우.

- (기록 보관 요구사항)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수량, 생산자 및 수입자 정보, 판매 기록, 배출량 측정 방법, 사고 발생 시 방출량 등을 기록해야 하며, 모든 기록은 해당 관리 기간 동안 유지해야함

**[표 8] 동 개정안**

- (3) 기록 보관. 관리 기간 동안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약제로 사용하는 모든 법인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i)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공정 신청서에 처음 도입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수량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 (ii)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생산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수량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 (iii) 해당 법인이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시설에서 수령한 class II 규제 물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식별하는 기록;
  - (iv) 각 시설의 경우, 공정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문서화한 송장 또는 영수증 사본(법인에 대한);
  - (v)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사용하여 각 시설 내에서 제조된 각 제품의 수량을 식별하는 날짜가 기재된 기록;
  - (vi) 각 시설에 대해 공정 약제로 사용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유출 또는 방출이 100파운드

이상일 경우 그 날짜와 예상 수량에 대한 기록;

(vii) 각 시설에 대해 배출량 측정 및 계산에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과 보고된 배출량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 장비 매개변수, 측정 데이터, 근거 계산 및 기타 근거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viii) 각 시설에 대해, 이후 변형 또는 폐기되는 공정 물질로 사용된 각 class II 규제 물질의 양에 대한 날짜가 기재된 기록;

(ix) 공정제로 사용된 class II 규제 물질이 최종적으로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제로 사용한 사업체 이외의 사업체에 의해 변형된 경우, 이 섹션의 (e)(3)항에 규정된 해당 사업체의 변형 확인서 사본; 그리고

(x) 공정 물질로 사용된 class II 규제 물질이 class II 규제 물질을 공정 물질로 마지막으로 사용한 법인 이외의 법인에 의해 최종적으로 파기된 경우, 이 섹션의 (e)(5)항에 규정된 대로 해당 법인의 파기 확인서 사본.

- (사용 중단 통지) class II 규제 물질의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지해야하며, 이후 보고 의무는 종료되지만, 기존의 기록 보관 의무는 준수해야함

#### [표 9] 동 개정안

(5) 사용이 중단되었다는 통지. 법인이 모든 class II 규제 물질의 공정 물질 사용을 영구적으로 중단했음을 관리자에게 통지한 다음 해부터 공정 물질 사용에 대한 보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법인은 모든 해당 기록 보관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3

### 관련 법령 및 표준

(관련 법령)

- The Clean Air Act(대기오염방지법)

(규제원문 출처)

- 미국 연방 관보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0/10/2024-22380/protection-of-stratospheric-ozone-updates-related-to-the-use-of-ozone-depleting-substances-as>